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지침



2022.1



CONTENTS



I

개요

- 1. 배경 및 목적 5
- 2. 시행근거 및 시행일 5

II

시행지침 세부 내용

- 1. 용어의 정의 6
- 2.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사업주 6
- 3. 지원요건 8
- 4.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51
- 5. 지원대상 근로자 및 지원대상 제외 근로자 8~11
- 6. 지급기간 20
- 7. 지원금의 신청 22
- 8. 소멸시효 24
- 9. 지원금의 중복지원 제한 52

III

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 1. 지도 및 점검 3
- 2.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1~3

【참고】

- 1. 주요 질의응답 3
- 2. 「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전부개정 설명자료 3~4
 -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5
 - * 지급 규정 전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2~5
 -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시 제2021-106호)」 9~15
- 3.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6~7
- 4. 지원금 및 장려금 수급 해지신청 등 처리 지침 1~7



I 개요



1 배경 및 목적

- ① (배경)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비를 위해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희망은퇴 연령까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고용여건 형성 필요**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 재직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실직자는 신속한 취업촉진을 도모

- ② (목적) 이 지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2 시행근거 및 시행일

- ① (시행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 3(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준),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06호, 이하 ‘**지급규정**’이라 한다)»,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 ② (시행일) 2022년 1월1일

관계 법령

-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 수준 및 기간과 지원금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 3(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 영 제28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란 해당 사업에서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월평균 근로자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마지막 날 이전 3년 동안의 60세 이상인 월평균 근로자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II 시행지침 세부 내용



1 용어의 정의 (지급규정 제2조)

- ① **(고령자)** 지급규정 및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고령자’는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②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함
- ③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말함

2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사업주

2-1 지원대상 사업주 (지급 규정 제3조 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규모 확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봄(영 제12조제3항)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정보마당(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1)

|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 근로자 수 |
|---|------|----------|
|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C | 500명 이하 |
| 2. 광업 | B | 300명 이하 |
| 3. 건설업 | F | |
| 4. 운수 및 창고업 | H | |
| 5. 정보통신업 | J | |
|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N | |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 9. 도매 및 소매업 | G | |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 11. 금융 및 보험업 | K | |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
| 13. 그 밖의 업종 | | 100명 이하 |

※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통계청장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2-2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주 (지급 규정 제3조 제2항) ⋮⋮⋮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① 행정기관(「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2조 제1호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 시스템(www.alio.go.kr)에서 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은 클린아이 시스템(www.cleaneye.go.kr) 확인

②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일반유희 주점업(56211), 무도유희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④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관계 법령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기관 정의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기관 및 지방의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 고용보험법 제35조제4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하면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지원요건

지급규정

- 제8조(지원요건) 1.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일 것
2. 제10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월평균이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 이전 3년간(사업적용기간이 4년 미만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월평균 보다 증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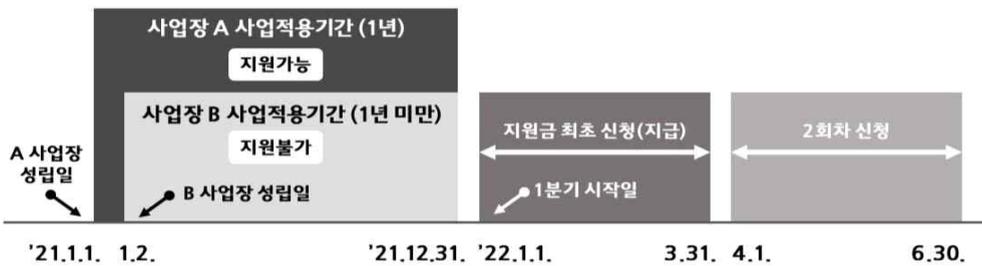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최초로 지급한 분기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최초 신청(지급)이 '22년1분기인 경우 지원요건(사업적용기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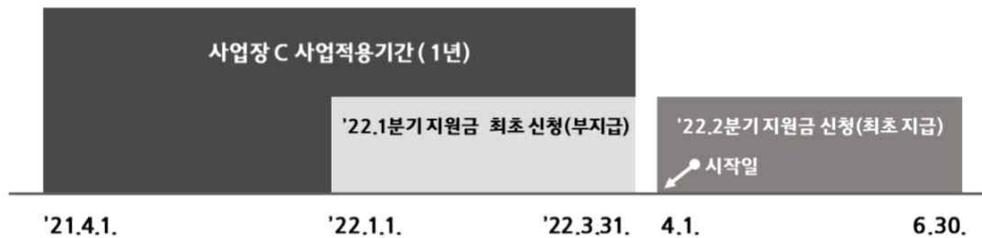
- ✓ 지원금 최초 신청 및 지급이 '22년 1분기인 경우 분기 시작일(1월1일)을 기준으로 바로 전날('21.12.31.) 까지의 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사업장(B)는 사업적용기간이 '21.1.2. ~ '21.12.31.로 1년 미만이어서 지원대상이 아님

<최초 지급이 '22년 2분기인 경우 지원요건(사업적용기간) 예시>

- ✓ 지원금 최초 지급이 '22년 2분기인 경우 '22.3.31.까지의 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② (고령자수 증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

** 사업적용기간이 4년 미만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 고령자 수 산출 방법

① 고령자 수에 포함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 매월 말 현재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 1년 초과이므로 1년(1월1일~12월31일) 근무한 사람은 포함 대상 아님
 - 계약직·상용직 등 고용형태, 60세 이전부터 계속고용여부, 축탁 등을 불문하고 실제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는 포함
 - * 예)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였고 생년월일이 1962년 2월25일인 사람의 2022년 1분기 고령자 수 산정 시 1월에는 미포함, 2월과 3월에는 각각 포함
 - 지원금 신청 분기 중에 신규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 *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자는 포함 대상 아님
- ㉢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근로자
 - 매월 말 현재 취득여부는 이직일이 기준임(상실일 기준이 아님)
 - ☞ 지원금 신청(접수) 시까지 피보험자격 유지 여부와는 관계 없음
 - 이중 취득(이중 고용 포함)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정리*된 경우 산입 여부를 판단
 - * 1.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 다만,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 해태 등으로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 정리가 지연되는 사유로 지원금의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이중 취득 우선 처리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고령자 확인) 고용보험전산망 → 피보험자 → 피보험자 관련 조회 → 고령자지원금 관련 목록에서 ‘재직기간 1년 이상 초과하고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 확인 가능

- 지원금 신청 시 첨부한 고령자 명단을 토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 처리가 없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토록 조치

② 분기별 매월 말 고령자 수 평균 산출

- ‘분기’는 일년을 4등분한 3개월씩의 기간을 말함
- 지원금 신청 분기의 매월 말 현재 위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고령자 수의 합계를 3개월로 나눈 인원수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 (분기 월평균이 5.33명 → 5.3명)

<분기별 평균 고령자 수 산출>

☞ 1분기 평균 고령자 수 = $\frac{1\text{월 말 현재 고령자 수} + 2\text{월 말 현재 고령자 수} + 3\text{월 말 현재 고령자 수}}{3\text{개월}}$

☞ 2분기 평균 고령자 수 = $\frac{4\text{월 말 현재 고령자 수} + 5\text{월 말 현재 고령자 수} + 6\text{월 말 현재 고령자 수}}{3\text{개월}}$

- 분기 중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한 달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는 달만을 산정 개월 수에 산입하고 산정 개월수만큼 월평균을 산출

<월의 중간에 입·퇴사하는 경우 고령자 수 산입 예시>

✓ 고령자(A)와 (C)는 1월 25일 입사(1년 초과 근로계약)하였고, 고령자(B)는 2월 27일까지 1년 초과 근무 해오다가 퇴직, 고령자(C)는 3월 29일까지 근로하고 퇴직, 고령자(D)는 3월 30일까지 1년 초과 근무 해오다가 퇴직한 경우

고령자수 산입 대상 및 월 평균 고령자수

| | |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1월(4명)</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left;"> 고령자 A 고령자 B 고령자 C 고령자 D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2월(3명)</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left;"> 고령자 A 고령자 C 고령자 D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3월(1명)</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left;"> 고령자 A </div>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left;"> 고령자 A, C 입사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left;"> 고령자 B 퇴직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left;"> 고령자 C 퇴직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left; margin-top: 5px;"> 고령자 D 퇴직 </div> |
| 1.1. 1.25. 1.31. | 2.27. 2.28. | 3.29. 3.30. 3.31. |

※ 월 평균 고령자 수: [1월(4명) + 2월(3명) + 3월(1명)] ÷ 3개월 = 2.6명(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

③ 사업적용기간*이 4년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과거 3년 월평균 고령자 수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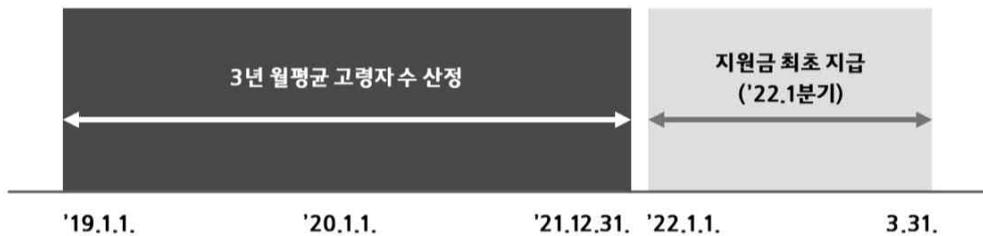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 지원금 신청(지급) 분기의 전날까지의 기간

- 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한 분기의 전날부터 과거 3년동안 매월 말 현재 위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고령자 수의 합계를 3년(=36개월)으로 나눈 인원수로,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3년 월평균이 4.32명 → 4.3명)

<사업적용기간이 4년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3년 평균 고령자 수 산출>

✓ 예시1) 지원금 최초 지급이 '22년도 1분기인 경우

$$\begin{aligned} \text{3년 평균 고령자 수} &= \frac{\text{3년 고령자 수 합계} < \text{'19년도(1월 말 + 2월 말...+ 12월 말)} + \text{'20년(1월말 + ~12월)} \\ &\quad + \text{'21년(1월말 + ~12월)} >}{36\text{개월}} \end{aligned}$$



✓ 예시2) 지원금 최초 지급이 '22년도 2분기인 경우

$$\begin{aligned} \text{3년 평균 고령자 수} &= \frac{\text{3년 고령자 수 합계} < \text{'19년도(4월 말 + ... + 12월 말)} + \text{'21년(1월말 + ~12월)} \\ &\quad + \text{'22년(1월말 + 2월말 + 3월말)} >}{36\text{개월}}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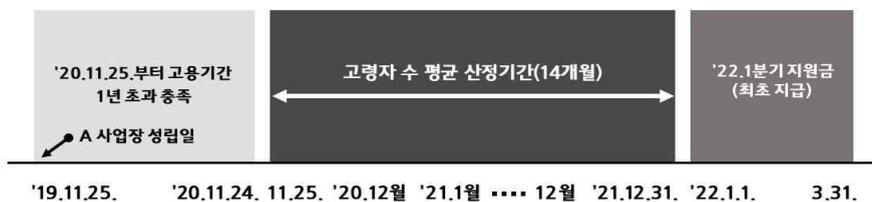
④ 사업적용기간이 2년이상 4년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과거 월평균 고령자 수
 (지급규정 제8조 제2호: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산출)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초과하는 날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하여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평균 고령자 수 산출
 - 고용보험성립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고용기간 1년 초과 고령자 지원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사업적용기간 최초 1년은 제외
 -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이므로 월 중에 1년을 초과하는 날이 속한 달도 1개월로 봄
 - 월평균 고령자 수 산출은 위의 ③과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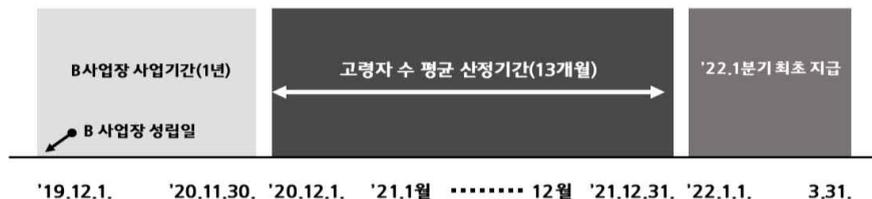
<사업적용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사업장의 월평균 고령자 수 산출>

- ✓ 예시1) 고용보험성립일이 '19.11.25. 이고 지원금 최초 지급이 '22.1분기인 A사업장
 - 고용기간 1년 초과한 근로자 요건에 따라 '20.11.25.부터 고령자 수 산출
 - 매월 말('20.11.30.) 현재 고령자 수를 산입하므로 11.25.부터 11.30.까지 기간이 30일 미만이어도 (분모는)1개월로 봄. 따라서 14개월('20.11월 ~ '21.12월) 기간에 대한 월평균 고령자 수를 산출

$$\text{과거 월평균 고령자 수} = \frac{\text{고령자 수 합계} < \text{'20년도(11월 말 + 12월 말)} + \text{'21년도(1월말 + 2월말 + \dots + 12월말)} >}{14\text{개월('20.11월} \sim \text{'21.12월)}}$$



- ✓ 예시2) 고용보험성립일이 '19.12.1.이고 지원금 최초 지급이 '22.1분기인 B사업장
 - ☞ 고령자 수 산정기간 : '20.12월 ~ '21.12월 (13개월)



⑤ 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과거 월평균 고령자 수

- 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한 분기의 직전 분기 마지막 날부터 이전 12개월의 월평균 산출
 - 사업적용기간 최초 1년을 제외하면 과거 월평균 고령자 수 산정기간이 12개월 미만이 되는 바,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를 비교하는 기준값*으로는 부적절
 - ☞ 예시) 사업적용기간이 1년인 사업장은 비교기준 월평균 고령자 수 산정대상기간이 없는 경우 발생
 - *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또는 기업의 일시적 경영 상황에 따라 기업별·업종별·지역별 근로자 수가 큰폭으로 증감할 수 있는 만큼 고령자 수 증가 비교 기준값을 과거 3년간 월평균으로 함
 - 고령자 수 증가 비교 기준인 **과거 고령자 수 산정대상 기간을 최소 12개월로 함**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고령자만을 매월 고령자 수에 포함
 -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이 '고용기간 1년 초과' 인 만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월평균 고령자 수를 산출
 - ☞ 근로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는 지원금 최초 신청시에 근로계약서를 통해 1년 초과 여부를 확인

<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업장의 월평균 산정기간>

- ✓ 예시) 고용보험성립일이 각각 '21.1.1. 이고 지원금 최초 신청(지급)이 '22.1분기인 A사업장과 '22.2분기인 B사업장의 과거 월평균 고령자 수 산정기간



- ☞ 피보험자격취득기간 또는 근로계약서 등의 방법으로 1년 초과 재직(고용)이 확인되는 고령자만 월별 고령자수에 포함

* B사업장의 경우 2분기의 매월 말 현재 피보험기간이 1년 초과하는 고령자가 있을 수 있음

⑥ 사업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장

- 지급규정 제8조 제1호에 따른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 아님

4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지급규정

제9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제8조제2호에 따라 증가한 근로자의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에 분기 30만 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임
 다만,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분기 중에 고용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월할 계산함
 ②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함.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함

4-1 지원금액

① 분기별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 분기 30만 원” 을 지급

*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 신청 분기 월평균 고령자의 수 - 최초 신청 분기 이전 월평균 고령자의 수 (단, 지원한도 이내)

②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 지급

-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지원금 신청 분기 중에 고용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자가 있는 달만 피보험자 수 및 고령자 수의 월평균을 각각 산출

<신청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평균 근로자(고령자) 수 산출 및 지원금>

- ✓ 예시1) '22.1.31. 사업 폐지 : '22.1.31. 현재 피보험자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 아님
- ✓ 예시2) '22.2.15. 사업 폐지 : '22.1.31. 현재 피보험자 수 및 고령자 수가 월평균이고, 지원금은 1개월분만 지급 (☞ 지원대상 고령자 수가 1명이면 지원금액은 100,000원임)
- ✓ 예시3) '22.3.1. 사업 폐지 : 월평균은 <(1월 + 2월) ÷ 2개월> 방법으로 산출, 지원금은 2개월분만 지급 (☞ 지원대상 고령자 수가 1명이면 지원금액은 200,000원임)

4-2 • 지원한도

①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초과 기업)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에 더 작은 인원 수가 지원한도임

☞ 지원금 신청 분기의 ㉠고령자 수 증가 인원과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이내 중 제일 작은 인원수에 대해 지원

②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 지원한도는 3명임

○ 신청 분기의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비교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고령자 수 증가 인원과 ㉡지원한도 3명 중 작은 인원수에 대해 지원

4-3 •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산출 예시

표1 <'22년 1분기(최초) 지원금 신청서 산정 예시>

※ 과거 3년간 연도별 월평균 고령자 수 : '19년(60명), '20년(62명), '21년(62명)

①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월평균만 60세 이상이고 고용기간 1년 초과한 고령자 수 평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 ※산출: (60+62+62)÷3개월=5.11명
5.1명

| | 월별 | 피보험자 수 | 고령자 수 (고용기간 1년 초과) |
|-------------|---|--------------------------|-------------------------|
| 근로자 고용현황 | ㉠(1) 월 말일 기준 | 30명 | 5명 |
| | ㉡(2) 월 말일 기준 | 31명 | 6명 |
| | ㉢(3) 월 말일 기준 | 30명 | 5명 |
| | 월평균 <(㉠+㉡+㉢) ÷ 3,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 | 30.3명[㉡] | 5.3명[㉢] |

※산출:(30+31+30)÷3개월=30.33명 ※산출:(5+6+5)÷3개월=5.33명

| | | |
|----------|--|-----------------------------------|
| 신청 내용 | ④증가한 고령자수 (③-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 ※산출:(5.3명-5.1명=0.2명) 1명 |
| | ⑤지원한도 (= ②× 0.3의 값과 30명 중 더 작은 수를 기재,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 9(9.0)명 |
| | ⑥지원대상 고령자 수 (④≤⑤면 ④, ④ > ⑤이면 ⑤) | 1명 |
| | ⑦신청금액 (=⑥× 30만 원) | 300,000 원 |

표2 <지원금 신청기간 중에 사업 폐지한 경우 지원금 산정 예시>

✓ 예시) 6월 15일까지 사업하고 고용보험관계 소멸한 경우 2분기 지원금은 2개월(4월 ~ 5월) 평균 피보험자 수 및 고령자 수를 기재, 지원금은 월할 계산하여 2개월분만 지급

※ 신청서

| 근로자 고용현황 | 월별 | 피보험자 수 | 고령자 수 (고용기간 1년 초과) |
|-----------------------------------|---------------------------------------|------------|------------------------------------|
| | ㉔(4) 월 말일 기준 | 30명 | 5명 |
| ㉕(5) 월 말일 기준 | 31명 | 6명 | |
| ㉖(6) 월 말일 기준 | (사업 폐지) 0명 | (사업 폐지) 0명 | |
| 월평균(<((㉔+㉕) ÷ 2개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 | ※산출:(30+31)÷2개월 30.5명 ^㉗ | | ※산출:(5+6)÷2개월 5.5명 ^㉘ |
| 신청 내용 | ㉙지원대상 고령자 수 | | 1명 |
| | ㉚신청금액 (=㉙× 30만 원÷3개월x2개월) | | 200,000 원 |

4-4 • 지원금 지원한도 적용 산출 예시

표3 <월 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초과 사업장 지원한도 : 30% < 증가인원 < 30명인 경우>

| 직전 3년 평균 고령자 수 (a) | 1분기 신청 | | | | | 고령자 수 증가인원 (d=c-a) | 지원한도 인원 ^㉛ (e=b*30%) | 지원한도 인원 ^㉜ (f=30명) | 지원대상 인원 (g) |
|--------------------------|--------|----|----|----|-------------|--------------------------|--------------------------------------|------------------------------------|-------------------|
| | 구분 | 1월 | 2월 | 3월 | 월평균 | | | | |
| | 피보험자 수 | 15 | 15 | 15 | 15.0 (b) | | | | |
| 4.1명 | 고령자 수 | 10 | 11 | 11 | 10.6 (c) | 7명 (6.5명) | 5명 (4.5명) | 30명 | 5명 |

☞ 고령자 수 증가인원 7명(소수점 첫째자리 올림)과 지원한도 5명(소수점 첫째자리 올림)과 최대 한도 30명 중 제일 작은 인원인 5명에 대해 지원

표4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초과 사업장의 지원한도 : 30명 < 30% < 증가인원인 경우>

| 직전 3년 평균 고령자 수 (a) | 1분기 신청 | | 고령자 수 증가인원 (d=c-a) | 지원한도 인원① (e=b*30%) | 지원한도 인원② (f=30명) | 지원대상 인원 (g) |
|--------------------------|--------|-------------|--------------------------|--------------------------|------------------------|-------------------|
| | 구분 | 월평균 | | | | |
| | 피보험자 수 | 120 (b) | | | | |
| 4.1명 | 고령자 수 | 40.6 (c) | 37명 (36.5명) | 36 명 | 30명 | 30명 |

☞ 고령자 수 증가인원 37명과 지원한도 36명과 최대 한도 30명 중 제일 작은 인원인 30명에 대해 지원

표5 <월평균 피보험자수 10명 이하인 사업장의 지원한도 : 증가인원 > 3명인 경우>

| 직전 3년 평균 고령자 수 (a) | 1분기 신청 | | 고령자 수 증가인원 (d=c-a) | 지원한도 인원 (e=3명) | 지원대상 인원 (f) | 비고 |
|--------------------------|--------|-------------|--------------------------|----------------------|-------------------|----|
| | 구분 | 월평균 | | | | |
| | 피보험자 수 | 7.6명 (b) | | | | |
| 1.9명 | 고령자 수 | 6.0명 (c) | 4.1 | 3명 | 3명 | |

☞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사업장은 지원한도를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를 적용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3명을 지원한도로 함
-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지원한도 3명을 비교하지 않음에 유의

5 지원대상 근로자 및 지원대상 제외 근로자

지급 규정

제10조(지원대상 근로자) ① 지원금 신청 분기의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다만,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② 지원대상 제외 근로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5-1 지원대상 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60세 이상일 것)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매월 마지막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22년도에는 1961.12.31. 이전 출생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1962년도 출생자는 월별로 판단

| 생년월일 | 1962년도 | 1월생 | 2월생 | 3월생 | ...기재 생략... | 11월생 | 12월생 |
|-------|-----------|------|------|------|-------------|-------|-------|
| '22년도 | 만 60세 해당월 | 1월부터 | 2월부터 | 3월부터 | ...기재 생략... | 11월부터 | 12월부터 |

② (재직자) 지원금 신청 사업장에서 만 60세 이상에 도달하기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한 60세 이상인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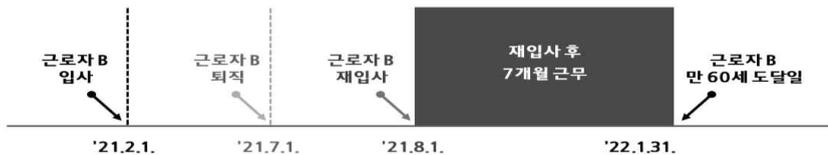
- 입사일로부터 만 60세에 도달한 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의 1년 초과 여부를 확인

<지원금액 산정 시 포함 여부 예시>

(1) 근로자 A는 1월 31일 현재 만 60세이나 재직기간이 만 1년 근무이므로 1월의 고령자 수에 미포함, 2월부터 1년 초과 근무에 해당하므로 2월 및 3월의 고령자 수에 포함



(2) 근로자 B는 '21.8.1. 재입사함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하여서 '22년 1분기 고령자 수에 미포함



③ (신규 채용된 자) 지원금 신청 분기에 신규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초과한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1년 초과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21.2.1. ~ '22.1.31.)인 근로자는 미포함

5-2 지원대상 제외 근로자

□ 지원금 산정대상 근로자에서 아래의 근로자는 제외해야 함

-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배우자 여부 등을 판단
-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
- ③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 ④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포함)

6 지급기간

지급 규정

제11조(지급기간) 최초로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년까지 지원. 다만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도 지급기간에 포함

□ 지원금은 매 분기별로 지급

- 지원금은 '22.1.1.부터 매 분기*별 신청 및 지급
 - * 분기는 일년을 4등분한 3개월씩의 기간을 말함
-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최초로 충족한 분기를 기준하여 2년간 지원
- 지원금 최초 지급 이후 특정 분기에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기(기간)도 지급기간 2년에는 포함

<지급기간 예시>

(1) 최초로 지원요건을 충족한 지원금이 '22년 1분기인 경우 지원기간: '22.1.1 ~ '23.12.31.



(2) 최초로 지원요건을 충족한 지원금이 '22년 2분기인 경우 지원기간: '22.4.1. ~ '24.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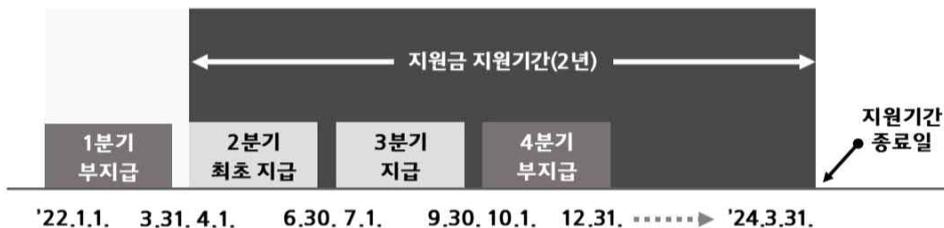
(3) 최초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이후 특정 분기에 지원요건 충족과 미충족을 반복하는 경우
 ① 최초로 지원요건을 충족한 지원금이 '22년 1분기이고, 2분기 및 4분기 지원금은 각각 지원요건을

미충족하여 부지급 하였더라도 동 사업장의 지급기간은 '22.1.1. ~ '23.12.31.(2년)임



② 최초로 '22년 1분기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요건 미충족으로 부지급, '22년 2분기 지원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기간은 '22.4.1. ~ '24.3.31.임



7 지원금의 신청

지
급
규
정

제12조(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등)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서 상의 은행계좌로 지급

7-1 지원금 지급 신청

① 지원금은 매 분기*별 신청 및 지급

* 분기는 일년을 4등분한 3개월씩의 기간을 말함

②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 지급규정 별지 서식 제2호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③ 지원금 신청서는 온라인(www.ei.go.kr)으로도 제출 가능

④ 지원금 신청서는 사업주 단위로 제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여부, 피보험자 수, 고령자 수, 해당 분기 지원인원 한도 산정 등은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단위로 함
-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상기의 합리적인 경우라 함은 하나의 법인일지라도

지(점)사에서 독립적으로 ① 해당근로자와 지(점)사의 장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용해고 등에 인사권한을 가지고, ② 수익의 주체가 지점으로 귀속되며, 인건비를 자체 수익으로 조달하는 등 인사노무 회계 등이 사실상 분리된 경우에 한함

7-2 • 제출서류

- ①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지급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의 2쪽 활용
- ②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입사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입사한 달이 속한 분기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만 제출, 다음 분기부터 제출 생략
- ③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신청 분기마다 제출)
 - * 피보험자적의 취득·상실의 신고대상이 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전산망을 통해 확인(최초 신청 시에는 위 구비서류를 모두 확인)

7-3 • 서류 보완 및 반려

- 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제출을 요청
- ② 보완기간, 횟수 및 신청서류 반려에 대한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준용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4 • 지원금 지급

- ① (지급기한)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
- ② (지급방법) 지원금 신청서 상의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 개인 사업장은 사업주 본인, 법인 사업장은 법인 명의 은행 계좌로 지급
- ③ (결정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

8 소멸시효

지급규정

제107조(소멸시효) 제1항 제1호 :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제2항: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를 준용

① 지원금은 지급신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간 신청하지 않으면 시효로 지원금 신청권이 소멸**(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 민법 제166조*)

- ☞ 신청기간 규정이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라면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하여야 하고,
 - 법률의 위임 없이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을 행정규칙에서 정한 것은 효력이 없고 제척기간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규정 적용(대법원 판례 참조)

② 분기별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원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각 분기별 지원금 신청을 행사할 수 있는 해당 분기의 다음 달의 첫날임**

- ☞ 따라서, 각 분기별 지원금 신청일이 해당 분기 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3년을 초과하면 지원금 부지급 대상임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 예시) '22.1분기 지원금은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다음 날인 '22.4.1.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25.3.31.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

소멸시효 관련 참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시효의 중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 ❖ 대법원 판결 <2018두47264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2021.3.18. 선고> 발췌
 - 수급권자의 추상적 권리의 행사(급여 지급 신청)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관할 행정청의 지급결정이 있는 후 수급권자의 구체적 권리의 행사(청구, 당사자소송 제기)에 관한 기간은 소멸시효로 이해
 -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아무런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일반 조항에 따라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로 볼 수도 있음
 - 행정법 영역에서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다양한 형식의 행정법규에서 신청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신청기간 규정이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라면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하여야 함
 - 모법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제척기간이라고 볼 수 없음

9 지원금의 중복지원 제한

지급 규정

제13조(고용안정지원금의 상호조정 등) ① 다른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과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40조 '중복지원 방지' 규정에 따름

□ 다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 등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중복될 경우 다음의 9-1, 9-2, 9-3의 규정과 원칙에 따라 상호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9-1 지원금의 상호조정 관련 규정

-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②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40조 (중복지원 방지)
- ③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지침 시달 (2021.4.26 고용정책총괄과-1391)
 - 지원금 및 장려금 수급 해지신청 등 처리

9-2 **지원금의 상호조정 지급**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지원금·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된 기간에 대해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음과 같이 상호조정하여 지급

-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 조치기간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동 지원금을 신청하더라도 위의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영 40조 제1항)

☞ ‘고용유지지원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중복 시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

 적용사례: 계속고용된 근로자 기

| 구분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여부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여부 | |
|------------------------------------|---------------|-----------------|----------|
| | | 고용유지기간 中 | 고용유지기간 外 |
|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 | 휴업·휴직자 | × | ○ |
| | 비대상자 | ○ | ○ |
| 고용유지조치기간 이전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 | 휴업·휴직자 | × | ○ |
| | 비대상자 | ○ | ○ |

- 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영40조 제2항)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중복 시 하나의 장려금 또는 지원금만 지급

- 다만,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만료 전 사업주가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다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9-4의 <지원금 및 장려금 수급 해지신청 등 처리>에 따라 지급

-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영40조 제4항)

☞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원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100% 지급

* 일자리 함께하기(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및 고용환경 개선 시설을 설치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비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90호, 시행]

I. 상호조정비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다음의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70%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라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0%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100%

④ 지원금을 지급할 때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 (법 제26조의 2 및 시행령 제40조의2)

－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조치로 인한 지원금 외의 지원금(운영비, 관리비, 위탁사업비 등)과는 중복지급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지원의 제한)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9-3 지원금 우선 지원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노사발전재단 등의 일터혁신컨설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생애경력 설계서비스에 참여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지급규정 제13조 제2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6.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6의2.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지원금
 7.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8.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 ③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⑤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을 지급한다.
- ⑥ 근로자가 제28조 또는 제28조의2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9-4 • 지원금 및 장려금 수급 해지신청 등 처리

-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관련 동일한 기간에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② 그럼에도 지급기간이 개시된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지원기간 만료 전 사업주가 제40조 제2항에 따른 다른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급 해지 처리 후 지급할 수 있음
 - (대상사업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수급하고 있고 잔여 지원기간이 있는 사업주가 「고용장려금 사업계획 및 지원 해지 확인서」 를 제출한 사업주
 - (지급처리) 해지 확인서 접수일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가 이미 접수되어 지급처리 중인 신청 건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잔여기간은 지원 중단하고 다른 장려금 지급
- ③ 지원금 및 장려금 해지신청 등 처리는 별첨 <지원금 및 장려금 수급 해지신청 등 처리, 2021. 4.27. 고용정책총괄과>에 따라 처리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3항 발췌(고시 제2021-36호, 2021.4.27.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통보받은 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19조에 따라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9호 서식의 '고용장려금 사업계획 및 지원 해지 확인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할 경우, 해당 장려금 신청권한을 해지하고 다른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지 신청의 효력은 동 확인서 제출일부터 발생하며, 이후 취소하지 못한다. 확인서 제출일 이후 지원 가능한 전체 대상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발생치 아니한다.

III 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지급규정

제14조(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제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도 및 점검

- ① **(목적)**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의 적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지도, 부정수급 등 법령 위반사항 예방 및 적발
- ② **(수행기관)** 지방노동관서
- ③ **(지도점검 실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원금의 지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자의 명부, 근로자의 임금 지급 상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함
- ④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 시 사업주 등에게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108조제1항)
 - 위의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4호)
- ⑤ **(조사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 시 소속직원에게 사업주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
 - 이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6호)

2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 ①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
- ② **(부정수금액 반환명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반환을 명령하여야 함 (법 제35조 제1항)
- ③ **(부당이득액 반환명령)** 사업주가 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착오 등으로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 반환을 명령하여야 함 (법 제35조 제3항)
- ④ **(지급제한)**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 지급을 제한(법 제35조 제1항)
 -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 가능

<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 (시행규칙 제78조 관련) >

| | | | |
|-----------|------------------------|--------------------------|-------------|
| 300만 원 미만 |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 1,000만 원 이상 |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 ⑤ **(추가징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신청하여 제재처분(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함 (법 제35조 제2항)
- 다만, 부정행위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음

< 제재처분에 따른 추가징수 (시행령 제56조 제2항 관련)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 부정수급 금액의 5배 | 부정수급 금액의 2배 |

- ⑥ **(형사처벌)**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지원금을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법 제116조 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법 제116조 제2항)
- ⑦ **(지급 제한 등의 통지)** 지원금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72호 서식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에 의거 통지

 **관계법령**

- ❖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 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4. 제5장의2에 따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등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8조의5, 제29조,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 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
-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또는 용화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부턴 그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
 3. 삭제 <2020. 8. 28.>
-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영 제56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3호서식의 훈련비·훈련수당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한다.

참 고

01 | 주요 질의응답

02 | 「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전부개정 설명자료

-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지급 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시 제2021-106호)」

03 |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 결정 통지서】

04 | 【지원금 및 장려금 수급 해지신청 등 처리 지침】

【참고1】

주요 질의응답

Q1

이중 취업으로 인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이중 취득된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 수, 60세 이상 근로자 수, 10명 이하 피보험자 수 등 산정방법은?

A1.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을 제한하고 있고, 우선 순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해당 기업 외에 타 사업장에도 고용되어 이중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을 정리하고, 이후 피보험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 (이중 취득 정리)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피보험 자격 이중 취득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1.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이때,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해태 등으로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 정리가 지연되는 사유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이중 취득 우선처리를 요청하는 협조공문 발송”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Q2

특수형태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을 인정하고 있는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A2. 2021.7.1.부터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보수액 합산한 금액)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때 노무제공자인 둘 이상의 일자리에서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은 인정함.

특수고용형태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는 적용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고용안정사업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해당하지 않음

* (21.7월 적용: 12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Q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요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급 방법

A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는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을 지원토록 하고 있음.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59세인 근로자가 정년 60세에 도달하더라도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고용하는 등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 3년간 월평균보다 당해 분기의 월평균이 증가한 기업(인원)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어서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의지가 크게 작용하는 지원제도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폐지와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퇴직자 재고용 등과 같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이 지원요건이어서 재직중인 59세 및 60세인 근로자를 계속고용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비록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고령자 수 증가에 대한 지원이어서 계속고용장려금처럼 지원 대상 근로자를 특정할 수는 없어 동일한 근로자로 인해 둘 이상의 장려금 요건을 각각 충족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이 관련 규정, 두 장려금의 취지 및 지원요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장려금만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Q4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받는 사업주에게 동시에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A4.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제2항은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5(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장려금)만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지원금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람

Q5

동일 법인 내 다수의 개별가입 사업장이 있는 경우 지원금 처리 방법

A5. 본사와 지사 또는 같은 법인 아래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인사·노무관리, 재무·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거나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지면 별개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장별로 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 가능함.

※ 본사와 지사 독립성 판단

-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
 -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 개개사업의 독립성 여부는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적용, 종합적으로 판단
 - ㉠ 장소: 본사·지점·출장소·공장·지사 등이 같은 장소에 있으면 1개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른 부문이 있다면 독립된 사업으로 봄. 반대로 장소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지점 등의 업무처리 능력을 볼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조직과 같은 하나의 사업으로 봄.
 - ㉡ 독립성: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대분류)이 다른지 여부,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Q6

일자리 안정자금과의 관계

A6.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가 은퇴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할 수 있도록 60세 이상 고령자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60세에 도달하는 근로자를 현재 일자리에서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직상태에 있는 고령자가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그 지원목적 및 취지가 다르므로 중복지원도 가능함.

Q7 감원방지의무 규정은?

A7. 고용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고용창출장려금은 기업이 추가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경우 지원 하는 제도임. 따라서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기존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없으므로 장려금이 지급되는 전·후 일정기간 근로자들의 인위적인 감원을 제한하는 감원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반면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화에 따른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임. 따라서 60세 이상까지 고용을 연장하거나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함으로써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하였고, 그에 따라 감원방지의무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Q8 지원금의 소멸시효 적용

A8. 지원금은 지급신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간 신청하지 않으면 시효로 지원금 신청권이 소멸(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 민법 제166조*)

- 법률의 위임 없이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을 행정규칙에서 정한 것은 효력이 없고 제척기간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규정 적용 (대법원 판례 참조)
- 분기별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원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각 분기별 지원금 신청을 행사할 수 있는 해당 분기의 마지막월을 기준으로 다음 달의 첫날임.

따라서, 각 분기별 지원금 신청일이 해당 분기 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첫 날부터 3년을 초과 하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음.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예시) '22.1분기 지원금은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다음 날인 '22.4.1.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25.3.31.까지 신청(접수)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



Q9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근로자A(60세)를 신규채용했으나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령자임을 안내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A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서로 다시 체결하고 지원금을 다시 신청했을 때 근로자A를 지원대상 고령자 수에 포함 할 수 있는지?

- A9.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근로계약서 변경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지원대상 고령자 수에 포함하여 지원금을 처리하기 바람.

【참고2】

「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전부개정 설명자료

2021. 12.

순서

| | |
|-----------------------------------|----|
| 1. 개정 이유 | 4 |
| 2. 주요 개정 내용 | 54 |
| 3. 참고사항 | 6 |
| [붙임]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1 |
| 2. 지급 규정 전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 2 |
| 3.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 9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1. 개정이유

-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신속한 취업 촉진을 위해 '22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시행 ('22년 예산 54억 원, 6,000명 지원)
 - * 재직 중 고령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실직중인 고령자는 신속한 취업촉진을 위해 분기별 월평균 60세 이상 근로자수 증가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전부 개정을 추진
 -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5를 신설하면서 지원금의 지원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 위임
 - ☞ **현행 고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명칭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으로 변경하고, 신설 「고령자 고용지원금」 내용을 추가**
- 지원제한 요건 중 사실관계 확인 방법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장려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가. (고시 명칭)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으로 변경

- (현행)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절차 등을 규정
- (개정)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절차 등 추가

| 현행 | 개정 |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

- 나. (목적 및 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고시 목적을 규정하고, 지원금 통합 명칭(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과 지원금의 종류(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용어를 정의 등에 반영(제1조, 제2조)

| 현행 | 개정 |
|--|--|
| <p>제1조(목적) <u>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u> <u>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u> <u>수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u></p> <p>제2조(정의) <u><신 설></u> <u><신 설></u></p> <p>1. <u>계속고용제도</u> 2. <u>계속고용제도 시행일</u></p> | <p>제1조(목적) <u>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u>----- <u>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방법</u> <u>및 절차 등</u> ----- -----</p> <p>제2조(정의) 1. <u>‘고령자’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u> 2. <u>‘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사업주가 정년을</u> <u>연장 등의 방법으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u> <u>하여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u> <u>것과(이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라 한다)</u> <u>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u> <u>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u> <u>‘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함</u></p> <p>3. <u>계속고용제도</u> 4. <u>계속고용제도 시행일</u></p> |

**다. 현행 제3조제2항제5호에 명시한 ‘2019년1월1일 이전 계속고용제도 도입사업주’
요건을 삭제, 동일 요건을 제4조제4호에 신설**

- 고시를 전부 개정하면서 1장(1조~3조)을 총칙으로 두었고 현행 계속고용장려금 요건에 한정되는 제3조제2항제5호는 삭제하고 개정안 제4조 제4호에서 명시
 - 현행 제3조제2항제5호는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 내용이고 신설 제4조제4호는 지원 대상 내용이므로 신설하면서 **자구 수정**

| 현행 | 개정 |
|---|---|
| <p>제3조② ~ 다음 사업주는 계속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p> <p><u>제5호) 2019년 1월1일 이전에 계속고용 제도 도입 사업주</u></p> <p>제4조 (생략) 다음 사업주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한다.</p> <p><u><신 설></u></p> | <p>제3조② _____</p> <p>-----</p> <p><삭제></p> <p>제4조 _____</p> <p>-----</p> <p><u>제4호) 2019년 1월1일 이후에 계속고용 제도 도입시행 사업주</u></p> |

라. (지원대상 제외 요건) 사실관계 확인 방법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장려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건 개정

- (4촌이내 혈족인척) 사업주와의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 여부에 대해 전산연계 등 확인 방법의 실현가능성은 실무적으로 곤란한 요건이고, 근로자에 해당하면 지원 제한 이유 없으므로 삭제
- (고액임금자) 계속고용장려금에서만 제한하고 있고,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토록 하는 장려금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임금수준 요건은 삭제

| 현행 | 개정 |
|---|--|
| <p>제6조 제②항 다음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p> <p>1. <u>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준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u></p> <p>5. 월 임금이 6,860,000원 초과하는 근로자</p> | <p>제6조 제②항 _____</p> <p>_____</p> <p>1. <u>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준비속</u></p> <p>< 삭제 ></p> |

마.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 신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대상, 지급기간 등을 신설 (제2장 제2절)

☞ 제1장 총칙(목적·정의·지원대상 사업주) → 제2장 지원요건(제1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2절 고령자 고용지원금) → 제3장 지원신청 등

*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서식(별지 제2호서식) 신설

| 현행 | 개정 |
|-------|---|
| <신 설> | 제8조(지원요건) 고용보험성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제10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고령자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월평균이 지원금 최초 신청일 이전 3년간(사업적용기간이 4년 미만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월평균보다 증가 |
| <신 설> | 제9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분기별 30만 원 지원. 분기 중에 고용보험관계 소멸하는 경우 월할 계산 지급 - 분기별 평균 피보험자 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10명 이하 사업장은 3명 한도) |
| <신 설> | 제10조(지원대상 근로자) 지원금 신청 매월 마지막 날 기준 만60세 이상으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초과(신규채용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정함이 없거나 1년 초과)인 근로자 제11조(지급기간) 최초로 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년간 지원 |

바. 자구 수정·정비

- ① (용어) 현행, 계속고용장려금 → 개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또는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 ② (지원한도) 지원한도의 기준은 ‘피보험자 수’ 이므로 지원한도 금액(=지원한도 피보험자 수 × 지원단가) 자구를 삭제, 지급 규정 간소화

| 현행(발취) | 개정(발취) |
|---|--|
| 제5조③ 분기별 지원금액은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에 9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매 분기 지원금액의 한도는 270만 원(3명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5조②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한다. |

③ (지원대상 제외 사업주) 국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한 것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행정기관'으로 수정하고 동 행정기관 중 자구를 달리하는 '공직유관단체'를 명시

| 현행 | 개정 |
|---|--|
| 제3조②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제3조② 1. 행정기관(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지정된 기관), 공직유관단체(「공직자 윤리법」) |

* (가)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교육행정기관, (다)국회,법원 등, (라)공직유관단체

④ (지원대상 제외 근로자) 지원금의 사중손실 등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배우자 등을 지원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법인은 그 자체가 사업주이므로 '법인의 대표'를 명시

※ '20년도에 마련한 「계속고용장려금 지침」에 '사업주 및 법인의 대표'로 기재하여 시달하였음

| 현행 | 개정 |
|--|---|
| 제6조② 1.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제6조② 1.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한다)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사. 서식 정비

-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서식 용어 : (현행) 중전 정년 연령 → (개정) 정년 연령(도입 시), '변경된 정년 연령(정년연장 경우)' 란 신설
- ②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서식 신설
- ③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서식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 나. 예산조치 : '22년 예산에, 고령자 고용지원금 54억 원 반영되었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고시

붙임2

「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전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고령자 <u>계속고용장려금</u> 지급 규정</p> | <p>고령자 <u>고용안정지원금</u> 지급 규정</p> |
|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u>계속고용장려금</u> (이하 “계속고용장려금”이라 한다)의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수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5에 따른 고령자 <u>고용안정지원금</u>의 지원 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p> |
| <p>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 <p>제2조(정의) ----- -----.</p> |
| <p><u><신 설></u></p> | <p>1. ‘고령자’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p> |
| <p><u><신 설></u></p> | <p>2. ‘고령자 <u>고용안정지원금</u>’이란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과 (이하 ‘고령자 계속 <u>고용장려금</u>’이라 한다),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고령자 <u>고용지원금</u>’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p> |
| <p>1. (생략)</p> | <p>3. (현행 1호와 같음)</p> |
| <p>2. (생략)</p> | <p>4. (현행 2호와 같음)</p> |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지원대상 사업주)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u>계속고용장려금</u>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u>계속고용장려금</u>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p> <p>2. ~ 4. (생략)</p> <p>5. 2019년 1월1일 이전에 <u>계속고용제도</u>를 도입·시행한 사업주</p> | <p>제3조(지원대상 사업주) ① 고령자 <u>고령안정지원금</u>을</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u>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u></p> <p>1. 행정기관(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u>가목에서 다목까지</u>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u>공직유관단체</u>(「공직자윤리법」)</p> <p>2. ~ 4. (현행과 같음)</p> <p><삭 제></p> |
| <p>제2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 등</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4조(지원요건) <u>계속고용장려금</u>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 <p>제2장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요건 등</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u></p> <p>제4조(지원요건) <u>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u></p> |



| 현 행 | 개 정 안 |
|---|---|
| <p>1. ~ 3. (생 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p> <p>1. <u>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u></p> <p>2. ~ 4. (생 략)</p> <p>5. <u>해당 근로자의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해당 월에 한하여 적용한다)</u></p> <p>제7조(지급기간) <u>계속고용장려금</u>은 제6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계속고용된 날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까지 지원한다.</p> <p><신 설></p> <p><신 설></p> |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_____ _____ -----.</p> <p>1. <u>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한다)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u></p> <p>2. ~ 4.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7조(지급기간) <u>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u>----- _____ _____ _____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절 고령자 고용지원금</u></p> <p>제8조(지원요건) <u>고령자 고용지원금</u>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u>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일 것</u></p> <p>2. 제10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월평균이 최초로 <u>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 이전 3년간(사업적용기간이 4년</u></p> |

| 현 행 | 개 정 안 |
|---------------------------|--|
| <p><u><신 설></u></p> | <p><u>미만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u></p> <p><u>제9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제8조 제2호에 따라 증가한 근로자의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에 분기 30만 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분기 중에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u></p> <p><u>②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한다.</u></p> |
| <p><u><신 설></u></p> | <p><u>제10조(지원대상 근로자)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로 한다. 다만,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를 지원대상 근로자로 한다.</u></p> <p><u>② 지원대상 제외 근로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u></p> |
| <p><u><신 설></u></p> | <p><u>제11조(지급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최초로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한날부터 2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도 지급기간에 포함한다.</u></p> |

| 현 행 | 개 정 안 |
|---|--|
| <p><u>제10조(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등) (생략)</u></p> <p>제11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별지 1] <u>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신설></u></p> <p>[별지 2] <u>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u></p> | <p><u>제14조(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제한 등) (현행과 같음)</u></p> <p>제5조(재검토 기한) _____ _____ _____ <u>2022년 1월 1일</u> _____ _____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제1조(시행일)</u>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u>제2조(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적용례)</u></p> <p>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사업주가 종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7호, 2021.8.9.)에 따라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계속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p> <p>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사업주가 종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7호, 2021.8.9.)에 따라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p> <p>[별지1] <u>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u> [별지2] <u>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u></p> <p>[별지3] <u>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u></p> |



붙임3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06호

2021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과(이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라 한다),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3.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 가.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을 말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계속고용제도를 사실상 운영 중인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시행일을 소급하여 명시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한하여 소급한 시행일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본다. 다만, 소급한 시행일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본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주)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기관(「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제2장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요건 등

제1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4조(지원요건)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 나. 정년의 폐지
 - 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 다만,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제5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월의 중간에 입사 및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은 월 임금액을 지원한도로 한다.

②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근로자)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2.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3.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1.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한다)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한다.
3.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포함)

제7조(지급기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제6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계속고용된 날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까지 지원한다.

제2절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8조(지원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일 것
2. 제10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월평균이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 이전 3년간(사업적용기간이 4년 미만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제9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제8조제2호에 따라 증가한 근로자의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에 분기 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분기 중에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한다.

제10조(지원대상 근로자)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로 한다. 다만,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를 지원대상 근로자로 한다.

② 지원대상 제외 근로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지급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최초로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도 지급기간에 포함한다.

제3장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신청 등

제12조(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등)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지급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서 상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고용안정지원금의 상호조정 등) ① 다른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과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40조 ‘중복지원 방지’ 규정에 따른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노사발전재단 등의 일터혁신컨설팅,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에 참여한 사업주에 대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제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사업주가 종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7호, 2021.8.9.)에 따라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계속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사업주가 종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 2021-67호, 2021.8.9.)에 따라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지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별지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별지 3]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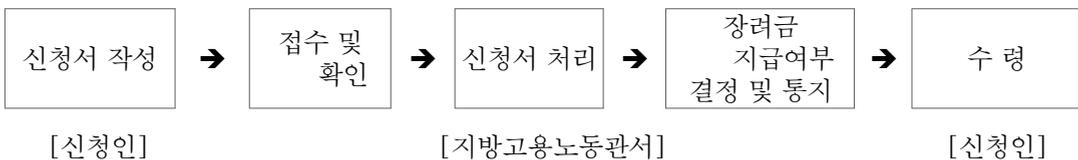


(제2쪽)

작성 방법

- ①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란 노사합의 등을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시작되는 날을 말함.
 - ② 장려금의 신청은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연장된 근로자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해당분기 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예) '20.5.7. 정년연장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20.2분기 신청기간은 '20.5.7.~'20.6.30.(2개월)
 - ③ 아래 중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 유형에 표시
* 정년연장 : 현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정년폐지 : 현 정년을 폐지한 경우
재고용 : 현 정년을 유지한 채 정년 도달 근로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 하는 경우
 - ④ 계속고용제도 시행으로 고용이 연장되어 ②의 해당 신청기간 중 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고령자 인원수를 기재
 - ⑤ 총 개월 수는 ④의 인원 에 대한 각각의 해당 신청기간 내의 개월 수의 합을 표시하며, 달력의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모두 포함되는 경우 1개월로 하여 산정함.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 3명('20.10.15.~'20.12.31.), '20. 11.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 2명('20.11.15.~'20.12.31.), '20.12.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 1명('20.12.15.~'20.12.31.)이 있는 경우
⇒ (3명×2개월) + (2명×1개월) = 8개월(6개월+2개월)
 - ⑥ 1개월 미만 에 대한 장려금은 전체 신청 대상기간 중 잔여기간(역일수)에 고시된 장려금을 일할 계산하여 기재
* <예시> [<해당 고시금액>/31일×17일(10.15.~10.31.)×3명] + [<해당 고시금액>/30일×16일(11.15.~11.30.)×2명] + [<해당 고시금액>/31일×17일(12.15.~12. 31.)×1명]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 버림
 - ⑦ 장려금 총 신청액 = [⑤의 총 개월수 × <해당 고시금액>] + ⑥의 장려금 합계 금액
- ※ 구비서류를 준비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 및 신청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제3쪽)

작성방법

- ① 지원금 신청 개월수: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는 2개월(11.1. ~ 12. 31.)이라고 기재
- ②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의 금액은 [$\text{해당 고시금액} \times 17\text{일}(10.15.\sim 10.31.) / 31\text{일}$]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림

년 분기 정년연장·폐지 명세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중전 정년 도달일 | 연장된 정년 도달일 | 장려금 산정 | | | |
|-----|-----|----------|--------------|---------------|--|------------------|--------------------------|---------|
| | | | | | 신청(산정)기간 | 개월수 ^① | 1개월 미만 ^② | |
| | | | | | | | 역일수 | 금액 |
| <예> | 홍길동 | '57.4.1. | '20.10.14. | '21.10.14. | '20.10.15.~'20.12.31. (* 고시금액 월30만원 경우) | 2개월 | 17일 | 164,510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계 | | | | | | 개월 | <input type="checkbox"/> | 원 |

작성방법

- ① 지원금 신청 개월수: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는 2개월(11.1. ~ 12. 31.)이라고 기재
- ②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5.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의 금액은 [$\text{해당 고시금액} \times 17\text{일}(10.15.\sim 10.31.) / 31\text{일}$]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림

년 분기 정년퇴직자 재고용 명세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정년 퇴직일 | 재고용일 | 재고용 종료일 | 장려금 산정 | | | |
|----|----|------|-----------|------|------------|----------|--------------------------|---------------------|----|
| | | | | | | 신청(산정)기간 | 개월수 ^① | 1개월 미만 ^② | |
| | | | | | | | | 역일수 | 금액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계 | | | | | | 개월 | <input type="checkbox"/> | 원 | |

(제2쪽)

| 만 60세 이상이고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명부 | | | | | |
|--------------------------------|-----|------------|-------------|--------------|----|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입사일 |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 비고 |
| <예> | 홍길동 | 1957.4.01. | 2019.01.15. | 2022.02.16.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작성 방법

1. 지원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 근로자수 등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봄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2. 피보험자 수 및 고령자 수는 각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재직중인 인원수를 기재

가. 고령자 수는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고 매월 말일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피보험자 수를 기재 (지원금 신청 분기에 신규 채용한 고령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 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피보험자로 함)

나. 아래의 사람은 각 월의 근로자 수 및 고령자 수에서 제외함

- 1)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 이민자(F-6)는 포함
- 3)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 4)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3. 각 항목별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의 ①~③에 기재하는 근로자 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 (예: 9.59명이면 → 9.5명으로 기재)

④,⑤에 기재하는 근로자 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예: 4.2명이면 → 5명으로 기재)

①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피보험자의 수 합계를 36개월로 나눈 인원수를 기재 (※ 향후 매 분기 지원금 신청 시에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인원임)

(예시) '22년 1분기 = $\frac{\text{고령자의 수 합계} < \text{'19년도(1월 말} + \dots + \text{12월 말)} + \text{'20년도(1월~12월)} + \text{'21년도(1월~12월)} >}{36\text{개월}}$

②,③ 월평균은 매월 말일 현재 피보험자의 수(고령자의 수)를 합산하여 3개월로 나눈 인원수를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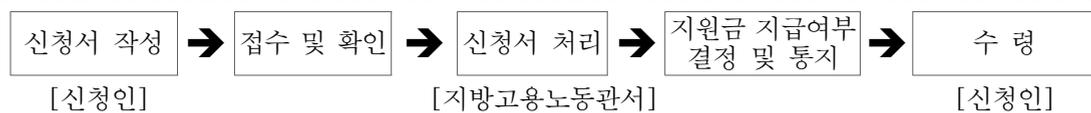
④는 ③의 월평균 고령자의 수에서 ①의 3년 평균 고령자의 수를 뺀 인원수를 기재

⑤ 지원한도는 위의 ②월평균 피보험자의 수 × 30%로 산출한 인원수와 30명 중에 작은 수를 기재하되, 월평균 피보험자의 수가 10명 이하이면 3명으로 기재

⑥ 지원대상 고령자 수는 위의 ④와 ⑤의 인원수 중에 같거나 더 작은 인원수를 기재

⑦ 신청금액은 ⑥지원대상 고령자 수에 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되, 원 이하는 버림

처리 절차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지 제3호서식] (2022.1.1. 개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 | | | |
|--------|--|---------|--|
| 사업장명 | |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장 주소 | | 대표자 | |
| 담당자 | | 전화번호 | |

2. 지급 내용

| 지원금 종류 (지원 유형) | 지급 내용 | | |
|---------------------|---------|---------|-------|
| | 지급대상 기간 | 지급 대상자수 | 지급결정액 |
| ①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정년 연장) | | 원 |
| | (정년 폐지) | | 원 |
| | (재고용) | | 원 |
| ②고령자 고용지원금 | | | 원 |

3.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5,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년 월 일

○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장 (직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4】

지원금 및 장려금 수급 해지신청 등 처리 지침

주 최대 52시간 시행,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지침 시달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가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6호, 2021. 4. 27. 시행)됨에 따라 관련 지침을 붙임과 시달합니다.

붙임 1.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사업 처리 방안 1부,
 2. 고용장려금 사업계획 및 지원 해지 확인서 처리 방안 1부. 끝.

고용노동부장관

수신자 지방청서(기업지원부서),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장), 고령살당센터소장

| | | | | | |
|-----|--------------|-------|-----|--------|------------------|
| 주무관 | 이정현 | 행정사무관 | 배지연 | 고용정책총괄 | 전달(2021. 4. 27.) |
| 협조자 | | | | 과장 | 권도인 |
| 시행 | 고용정책총괄과-1391 | | | 결수 | |

주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581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전화번호 044-202-7216 팩스번호 - / digodid2@korea.kr / 비공개(5)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원금 및 장려금 수급 해지신청 등 처리

<2021. 4. 27. 고용정책총괄과>

☑ 개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관련, 동일 근로자에 대해 고용창출장려금 또는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동일한 기간에 대해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도 신청 권한을 제한함에 따라 민원 발생
 - * 동 조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정 예정으로, 개정 전까지 신청 취소에 관한 동 지침 적용
 - 이에 따라 기 발생된 사업주의 수급권 해지 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사업의 목적 달성 및 취소 신청에 따른 혼선 최소화를 고려할 필요
- 지급 기간이 개시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 해당 지원기간 만료 전 지원대상 사업주가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다른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 수급 해지 신청 시 기존 지원을 중단하고 다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 신설
 -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40조제3항 및 별지 서식 제19호 '고용장려금 사업계획 및 지원해지 확인서' 신설

☑ 처리방안

- (적용대상 지원금·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명시된 지원금·장려금 간 중복지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 *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지원금,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위라밸일자리장려금,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 (적용대상 사업주) 적용대상 지원금·장려금별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거나 해당 지원금·장려금을 수급 중이나, 다른 적용대상 지원금·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
 - * 사업계획을 이미 신청하였으나 아직 승인받지 못한 상태인 경우, 다른 지원금·장려금을 신청 시에는 하나의 신청만 진행하도록 '반려' 안내하고, 선택된 하나의 신청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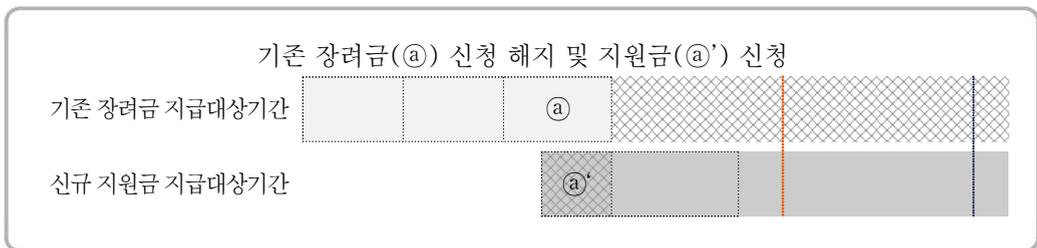
- 사업계획 승인 또는 지원금 등 신청한 이력이 있거나, 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잔여 지원 기간이 있어야 함
- 수급권 해지 신청은 사업주 자발적 선택에 의하여 진행되며, 이후 다른 지원금·장려금 신청 결과에 따라 취소 신청의 철회는 불가함을 인지해야 함

• (지급 처리)

① 해지 확인서 접수일에 기존 지원금·장려금 지급신청서가 이미 접수되어 지급처리 중인 신청 권은 지급하되, 이후 잔여기간은 지원 중단

- 이후 새로운 지원금·장려금(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 신청 시 지급대상 단위기간(㉠')이 기 지급된 기간(㉠)과 중복이 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지원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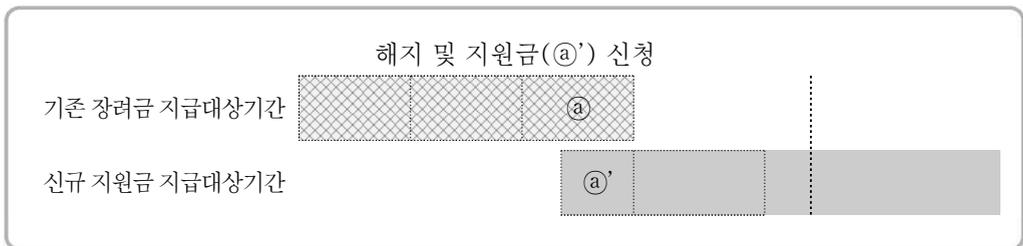
* 만약 단위기간 구분이 가능(월할 등)하면 중복이 되는 기간만 구분하여 제외하고, 구분이 불가능하면 (월할 불가능 등) 해당 단위기간 전체 제외



- 만약 ㉠' 기간에 대해 받고자 할 경우 ㉠기간에 대해 지원된 금액 중 상계 시 가능

② 해지 확인서 접수일 이후 기존 지원금·장려금 지급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음

- 기존 장려금 등에 대해 지급 신청이 안되므로,
- 기존 장려금 등의 지급 대상기간이 중복(잔여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라도) 되더라도 신규 지원금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기존 사업계획 승인 또는 지원금·장려금 신청 내역에 대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 하도록 안내

* '고용장려금 사업계획 및 지원 해지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다른 지원금·장려금 지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사전 요구할 수 없음

① 사업주는 수급 중인 상황에서 다른 지원금·장려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고용장려금 사업계획 및 지원 해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② 고용센터 담당자는 '고용장려금 사업계획 및 지원 해지 확인서' 접수 시 해당 사업주에게 동 확인서 내역을 재확인*

확인 내용(예시)

- ① '고용장려금 사업계획 및 지원 해지 확인서'는 기존 승인된 계획 또는 수급 중인 지원금에 대해 향후 지급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 ② '고용장려금 사업계획 및 지원 해지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다른 지원금·장려금 지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사전 요구할 수 없음
- ③ 이후 다른 지원금·장려금을 신청하여 부지급된 경우, 기존 지원금·장려금을 받고자 잔여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없음(해지신청 철회 불가)
- ④ 해지 확인서 제출 전 이미 접수된 이전 장려금 등 지급신청서에 대해서는 지급되나, 이후 지원금 등 신청 시 지급대상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대상기간은 지원되지 않음
- ⑤ '고용장려금 사업계획 및 지원 해지 확인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음

③ 확인된 '해지 확인서'는 고용보험 전산망에 등록하며, 기존 수급 중인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은 중단

- 새로이 신청된 지원금·장려금 내역에 대한 요건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